

제 1741 호
1993. 5. 1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이 원 종
편집인 : 공 보 관 김 태 수
전 화 : 731-6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2997 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	2
제 2998 호	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	3
제 2999 호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개정조례	3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전통을 소중하게 서울을 아름답게”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5. 11

서울특별시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시조례제2997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5조,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및 생활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 연구·조정
2. 장애인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개선 사항
3. 생활보호사업의 시행계획 및 보호기금의 적립, 관리와 사용
4.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생활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생활보호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정, 심의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시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5. 11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㉑

●서울특별시조례제2998호

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5. 11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㉑

●서울특별시조례제2999호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일반폐기물을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가정폐기물 :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2. 사업장 폐기물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 가. 소형사업장 : 사업장의 연면적이 165 제곱미터 미만인면서 1일 평균 3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 나. 중형사업장 : 사업장의 연면적이 165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일 평균 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다량폐기물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또는 1회에 1톤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4. 건축물폐채류 : 건축물, 구조물 등의 증개축이나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자재와 잡석 등의 폐기물
5. 대형생활폐기물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①서울특별시 전구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구청장이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내의 특정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 사유서
2.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
3.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지번, 면적, 도시계획상 용도, 관계지적도, 임야도 등 부속도서

③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지역 지정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의무)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의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처리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대형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

①시장은 일반폐기물 중 대형생활폐기물, 건축물폐재류를 수집·운반·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관할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배출된 폐기물을 적기에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자의 수집·운반·처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는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를 필하고 배출한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스스로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의거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조례에

서 정한 수집·운반·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장 폐기물의 재활용·감량화

제7조(폐기물의 재활용) ①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소각 매립하여 배출물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종배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용기에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역 설정에 맞게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일자를 지정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감량화) ①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는 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구청장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의 분리배출)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성상별로 분리배출토록 권장하고 분리배출된 폐기물의 매각을 알선하며 매각대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

제10조(자치구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①구청장은 지역여건에 맞게 다음의 청소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중간적환장
2. 압축처리시설
3.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일시 보관시설 및 장소

4. 기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

②구청장은 청소시설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의 광역처리) ①2개 이상의 구청이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거 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을 제정, 자치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광역처리조합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광역처리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4장 수집·운반수수료·처리비의 부과징수
제12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 및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2. 일반폐기물 처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3.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부과 징수할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들에게 일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①일반폐기물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처리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비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 폐기물을 처리 위탁하는 다량배출자의 처리비징수는 구청장이 대행할 수 있다.

③수집·운반대행업자가 수거한 건축물폐재류에 대한 처리비는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하여 처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및 처리비의 납기) ①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와 처리비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별표 4의 통합공과금 납기에 의한다.

②통합공과금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으로 하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채납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③제1항의 납기 중간에 새로운 부과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일을 기준으로 월할한 금액을 징수한다. 월계산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가산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6조(수수료 납부의무 승계)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상의 관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승계 전 2개월 이내에 발생한 수수료 등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제17조(수수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건물이 멸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5장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제18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의 허가 등) ①시장은 청소여건·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 제17조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제2조에서 규정한 폐기물의 종류와 성장별로 수집·운반 처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처리업 등의 신청자가 많아 허가업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업자의 제정도, 지역의 균형적 분포사항을 고려,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히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대행업자 지도감독) 시장은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의 장비 확보상태, 청소주기의 준수상태, 수수료 부과와 적정 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①시장은 제19조의 권한을 대행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①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82조의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의 귀속) 시장이 부과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제2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별표 1>, <별표 2>로 정한 수집·운반수수료와 처리비 중 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다량폐기물과 <별표 3>으로 정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종별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종 별	부 과 기 준			월부과금액 (단위: 원)	비 고
	등 급	재 산 세 액			
가 정 폐 기 물	초 과	200,000원 이상		650가산	·재산세액은 건물재산세입 ·비과세 건물은 파표에 의 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에 의한다.
		100,000원 초과시마다			
		200,000원 미만			
	1	100,000원 미만		4,260	
	2	80,000원 미만		3,250	
	3	50,000원 미만		2,750	
	4	20,000원 미만		1,730	
	5	10,000원 미만		1,340	
	6	5,000원 미만		880	
	7	2,000원 미만		160	
사 업 장 폐 기 물	소 형 사업장	1	165㎡ 미만	6,700	·쌍방향의하에 요율의 10 % 범위 안에서 가산 징 수할 수 있다.
		2	99㎡ 미만	5,640	
		3	66㎡ 미만	4,870	
		4	49.5㎡ 미만	3,200	
		5	33㎡ 미만	2,300	
		6	16.5㎡ 미만	1,270	
	중형사업장		㎡ 당	5,100	
	다 량 폐 기 물		㎡ 당	5,100	
건 축 물 폐 재 류		㎡ 당	10,000	·쌍방향의하에 요율의 20 % 범위 안에서 가산 징 수할 수 있다.	

〈별표 2〉					
일반폐기물 처리비 종별 부과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종 별	부 과 기 준			월부과금액 (단위: 원)	비 고
	등 급	재 산 세 액			
가 정 폐 기 물	초 과	200,000원 이상			
		100,000원 초과시마다			
		200,000원 미만			
	1	100,000원 미만			
	2	80,000원 미만			
	3	50,000원 미만			
	4	20,000원 미만			
	5	10,000원 미만			
	6	5,000원 미만			
7	2,000원 미만				
사 업 장 폐 기 물	소 형	1	165㎡ 미만		
		2	66㎡ 미만		
	중 형 사 업 장	압축쓰레기		m ³ 당	
		미압축쓰레기			
		음식폐기물			
다 량 폐 기 물	압축 폐기물		m ³ 당	5,700	
	미압축 폐기물			2,000	
	음식 폐기물			4,800	
건 축 물 폐 재 류	t 당			8,000	

(주 1) 다량폐기물, 건축물 폐재류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고시하는 반입료가 변동될 경우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한다.

〈별표 3〉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12조제3항 관련]			
품 목 별	규 격	부 과 금 액 (단위 : 원)	비 고
냉 장 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텔 레 비 전	42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세 탁 기		3,000	
애 어 컨	264㎡형 이상	8,000	
	66㎡형 이상	5,000	
	66㎡형 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탈 수 기		2,000	
공 기 청 정 기	높이 1m 이상	2,000	
장 능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서 랫 장	5단 이상	4,000	
	4단 이하	2,000	
신 발 장		2,000	
문 감		3,000	
화 장 대		3,000	
장 식 장		4,000	
용 접 세 트	장의자	5,000	
	의 자	2,000	

품 목 별	규 격	부 과 금 액 (단위 : 원)	비 고
침 대	1인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2인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캐 비 넷		4,000	
화 일 캐 비 넷	4단 이상	3,000	
	3단 이하	2,000	
양 수 책 상		7,000	
편 수 책 상		4,000	
피 아 노		15,000	
울 겐		4,000	
(주)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p><별표 4></p> <p style="text-align: center;">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처리비 증별납기[제14조제1항 관련]</p>			
종 별	기 준	고지서 송달기준	납 부 기 한
가 정 폐 기 물 사 업 장 폐 기 물 (소형사업장, 중형사업장)	매 월	다 음 달 2 ~ 10일	다 음 달 2 ~ 20일
		다 음 달 12 ~ 20일	다 음 달 12 ~ 말일
다 량 폐 기 물		다 음 달 22 ~ 28일	다 음 달 22 ~ 다음 다음달 10일

〈별표 5〉

과태료처분 부과기준[제21조 관련]

부 과 항 목	금 액 (천 원)			비 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법 제17조제4항)	400	700	1,000	
2.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0조제3항)	1,000			
3.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	300	500	1,000	

- (주) 1. 위반 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210mm x 297mm 선문용지 54g/m²

<별지 제2호 서식>

(개인통지용)

(수납은행보관용)

(구청통보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제 호 과태료납부서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제 호 영수필통지서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구청장

구청장 귀하

19-14

369

<별지 제3호 서식>


계 호 과태료납부 독촉장

납 부 의 무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				
⑥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
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① 고 지 금 액	② 취 소 (변경) 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간	⑤ 납부봉지서번호	
	⑤ 고지받은 일자	⑦ 과 태 료 금 액	
	⑧ 과태료 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 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 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m ²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수 신

발신 ○○구청장 ㉠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성 명 (한자)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고지일자	⑥과태료금액
	⑤부과기관	⑦이의제기일자

-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7호 서식>

제 1741 호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호	③ 과태료 처분 통지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 금 액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⑤ 당초	⑥ 독촉		⑧ 성명	⑨ 주 소		⑪ 이의제기일	⑫ 법원통보일

시

본

1993. 5. 11

297mm×210mm 신문용지 54g/m²